

2014년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2014년 11월 19일



<인사말>

민변은 2008년 이후 매년 정기국회에 맞추어 입법에 관한 의견을 발표 해 왔습니다. 올해 2014년에도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들 중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거나 처리되어서는 안 되는 법안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민변은 입법감시 작업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입법감시TF를 구성하였고, 입법감시TF가 중심이 되어 각 위원회의 의견을 취합하고, 위원회가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TF가 직접 대상 법률안을 선별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2014년은 세월호 침몰 참사로 인하여 온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휩싸인 한 해입니다. 참사 이후 정부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대응은 유가족을 포함한 수많은 국민을 분노케 하였고, 국회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두 차례에 걸친 여야의 합의안은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을 더욱 절망스럽게 하였습니다. 11월 8일, 여야는 극적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였지만, 진상조사위원회의 비민주적 구성과 제한된 권한으로 인해 올바른 진상규명까지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직전인 8월 26일 ‘민생안전과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호소문’을 발표하며 “정기국회에서 민생안전과 경제활성화 관련 30여개 법률안에 대한 시급한 국회통과”를 요청하였고, “관련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면 한국 경제는 길을 잃고 회복하기 힘들 것”이라며 야당을 압박하였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월 30일 국회시정연설을 통해서 이미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발표한 30개 법률안 들에 포함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본시장법’ ‘주택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국회의 빠른 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민변은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에서 촉구하는 민생관련 30개 법률안을 포함하여 노동, 여성, 사법, 소수자, 과거사 청산 등 한국사회에서의 주요한 민주주의와 인권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안들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41개 법률안을 선정하여 각 법률안에 대해 ‘입법 촉구’, ‘수정입법 촉구’, ‘입법 반대’, ‘입법 적극반대’ 방식으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민변의 의견서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에서 주장하는 ‘민생’법률안 들 중 다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이 아닌 일부 대기업과 재벌의 특혜를 위한 특별법안들입니다. 이 법률안들은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기에 야당은 입법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 모임은 여당과 야당이 실

제 ‘민생’을 위해서 국민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 사법, 여성 인권을 증진하는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심의를 하는데 우리 모임의 의견이 민주주의와 인권 옹호, 그리고 민생이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민변은 앞으로도 해당 법률안에 대한 지속적인 입법 촉구 및 저지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 11.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 목 차 >

I. 2014년 정기국회 민변 41개 핵심법안 선정 취지와 경과	7
II. 국토교통위원회	9
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9
2.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10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	10
4.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안	11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3
III. 기획재정위원회	14
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14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5
IV.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6
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2.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7
V.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19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
VI. 법제사법위원회	20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2. 재판과정 녹음 관련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	22
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4
4.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5
VII. 보건복지위원회	26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6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7
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9
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0
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30
VIII. 산업통상자원위원회	32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2
IX. 안전행정위원회	35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
2.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36
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8
X. 여성가족위원회	40
1.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40
XI. 외교통일위원회	41
1.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41
2. 양육비 관련 일부개정법률안	42
XII. 정무위원회	44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4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5
XIII. 환경노동위원회	47
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7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48
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3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4
5.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55
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57
7. 근로기준법 일부법률개정안	60
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61
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3
10. 성희롱 피해 구제 실효성을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중 일부 개정법률안	64
11. 배우자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협법 개정	66

I. 2014년 정기국회 민변 41개 핵심법안 선정 취지와 경과

1. 민변의 정기국회 핵심법안 선정활동

2014년 정기국회는 세월호 특별법 논의로 인하여 예년보다 늦게 가동되었다. 최근에 국정감사가 끝났고, 12월 초부터 본격적인 법안에 대한 논의 및 처리가 예상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전문가단체로 2008년 이후 입법감시TF를 구성하여 매년 정기국회에 맞추어 입법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2008년 정기국회에는 16개 핵심법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였고, 2009년에는 10개 민생경제 법안, 2010년에는 30개 핵심법안, 2011년에는 50개 핵심법안, 그리고 작년 2013년에는 60개 핵심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입법추구와 입법반대 법안으로 구분하여 발표하였다.

2014년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 정부와 새누리당은 소위 ‘민생법안’ 30개를 발표하며 국회에서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며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처리를 막는 양 여론을 호도하며 야당을 압박하였다. 이에 민변 입법감시 TF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30개 ‘민생’법률안에 대해 입법감시 TF와 해당 전문위원회들이 검토를 하였는데 그 결과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과 정반대였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이라 주장하였지만 실상 다수의 법안들은 규제완화나 대기업 재벌 봐주기, 의료민영화 등 서민들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는 법률안들이었다.

너무도 당연하게도 법률안이 의결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법률안은 우리 삶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삶의 구석구석이 규정 받게 된다. 여당과 야당은 주요 법률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려야 하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상호간 정쟁과 타협 없는 추진과 반대의 모습으로만 보여졌다.

그래서 민변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관점으로 매년 정기국회에서 시급히 통과해야 할 촉구법률안과 입법이 되어서는 안될 반대법률안들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국회를 포함한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2. 핵심법안 선정 경과와 선정 기준

민변 입법감시 TF는 일차적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했던 민생법률안 30개에 대해 민변내 민생경제위원회, 노동위원회, 환경보건위원회와 공동으로 검토를 하였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9. 30.에 발표한 바 있다. (해당보도자료 ‘민변, 2014 정기국회 정부와 새누리당 주장 ‘민생’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http://minbyun.or.kr/?p=26571>)

동시에 민변은 2014. 9.부터 19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정부안, 의원발의안에 대해 내부

11개 위원회(사법위원회, 노동위원회, 언론위원회, 여성인권위원회, 통일위원회, 환경보건위원회,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생경제위원회, 교육청소년 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 국제통상위원회)와 함께 검토와 논의를 거쳤다. 민변은 해당 법안이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 민생에 미칠 영향, 쟁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 문제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면서 법안 내용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2014 정기국회의 핵심과제를 사법, 노동, 민생경제, 여성, 복지/보건, 과거사, 소수자인권 7개 분야에 걸쳐 각 분야별로 입법촉구, 수정입법촉구, 입법반대, 적극반대 법안으로 나누어 41개 핵심법안을 선정하였다.

II. 국토교통위원회

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1901870)
소관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일자	2012. 9. 19.
대표발의	정부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상황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지금까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일정기간 전매행위가 제한되던 것을, 앞으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매행위 제한주택으로 지정한 경우에만 일정기간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함.▪ 주택공급질서 유지를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주택 중 수도권 지역의 공공택지·민간택지,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등과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함.

2) 검토의견 : 입법 반대

3) 주요 검토내용

○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집값상승을 초래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는 정책이다. 1998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평당 분양가가 1998년 512만원에서 2006년 1546만원으로 3배 이상 상승했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적 가수요자들만이 분양시장에 참가하게 되어 무주택자들이 생활의 기본수단인 주택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아파트분양시장의 기본적 기능이 상실되었다. 현재 주택가격과 주택거래량이 하락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택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다. 유엔 인간거주정책센터(UN HABITAT)에서 제시하고 있는 적정 PIR(연소득대비 주택가격의 비율)은 3-5배이다. 우리나라의 PIR은 계속 상승하여 현재 7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서울의 경우 주택가격 3분위에 해당하는 주택, 연소득 5, 6분위를 기준으로 할 때 11.8배, 10.3배이다. 이로 인해 집값 상승의 전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경기침체로 소득이 정체되어 있는 실수요자들은 큰 빚을 내서 집을 사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등 대부분의 주요 부동산 규제를 폐지하면서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당장은 예전 분양가 자율화 시기처럼 높은 분양가로 이익을 얻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강남재건축 등 일부 고분양가로도 분양이 가능한 지역이 있어 주변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가 주변시세를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임은 경험적으로 분명하다. 경기는 순환한다.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면 경기 침체기에서 확장기로 접어들 때 분양가가 급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때 가서 부랴부랴 분양가를 규제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으며 설령 분양가상한제를 다시 부활한다고 해도 사후 약방문이 될 것이 분명하다.

○ 원칙적으로 주택 전매를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전매행위제한주택 지정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부분도 문제이다. 결국 부동산 투기 세력을 통해 주택 가격 상승을 꾀하고 그 차익 실현을 보장하겠다는 정책적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것으로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내용이므로 반대한다.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생경제위원회

2.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폐지 법률안(1909807)
소관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일자	2014. 3. 20.
대표발의	신동우(새누리당)
주요내용	▪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부담금 부과 폐지

2) 검토의견 : 입법 반대

3) 주요 검토내용

○ 2014년 12월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여 그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를 해오지 않고 있었다. 위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법안의 목적은 현행보다 강남권 재건축에 혜택을 더 가산하여 빨리 진행시키고 이를 통해 주택경기를 부양시키려는 것이다.

○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3천만원 이상의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서울 강남권 등 투기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일부 특정 재건축단지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재건축 구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는 특정 재건축단지를 대상으로 한 특혜성 정책이라는 점, 부동산 경기의 안정화 기조를 깨뜨리는 부동산 경기의 인위적 부양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제도 폐지시 도시재생의 기본 방향과 관련하여 투기 억제 및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재생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려던 본래의 목적을 실행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에서 반대한다.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생경제위원회

3.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1910103)
소관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일자	이노근(새누리당)
대표발의	2014. 4. 7.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밀억제권역에서 1가구 1주택 원칙을 폐지하여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의 경우에도 기존에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

2) 검토의견 : 입법 반대

3) 주요 검토내용

○ 개정안은 투기 예방 차원에서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전국적으로 한 곳도 없음.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 강남권도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의 경우 소유주택 수만큼 주택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임.

○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취득·등록세 영구인하, 다주택양도세 중과 폐지 등 투기를 억제할 제도를 폐지하였고,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효과와 결합해 쉽게 국지적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음. 현재의 시장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재건축사업의 1가구 1주택 원칙을 폐지한다면 주택시장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위험이 있음. 특히, 자금동원력이 있는 투자자에 의해 재건축사업 예정 또는 시행중인 주택에 대한 대규모 투기적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현재 정비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것은 사업성이 악화되고 집단적 의사합치의 어려움에서 기인하는데, 부동산 시장이 장기 하향 안정화 추세에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사업성을 증대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

○ 현행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다주택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주택공급을 해주지 않지만 그 대신에 개발이익이 포함된 시가로 현금으로 청산해 주고 있으므로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음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생경제위원회

4.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안(1910603)
소관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일자	2014. 5. 14
대표발의	강석호(새누리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이용 인·허가 통합 간소화

2) 검토의견 : 입법 반대

3) 주요 검토내용

○ 이 법률안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으로 각 개별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통합 간소화한다는 명분에서 마련한 법안이다. 특히 안 제9조는 토지이용 인·허가의 신청을 위한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식 인·허가와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사전심의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다.

○ 위 법률안은 우리나라와 같이 가용 토지가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토지의 이용 및 개발은 엄격한 절차에 따라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 규정하고 있는 토지 이용 및 개발의 인·허가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이다.

○ 헌법 제122조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토지면적은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에, 모든 국민이 생산 및 생활의 기반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그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공동체의 이익이 보다 강하게 관철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토지재산권의 제한에 대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인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8. 12. 24. 89헌마214 등 참조).

○ 기존의 위 개별 법률들이 두고 있는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인·허가 절차는 토지의 이러한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 및 개발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 국토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세부운용계획을 세워 토지의 이용 및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 또한 위 개별 법률들은 이미 ‘인·허가 의제 제도’라는 토지 이용 등의 인·허가 간소화 절차를 마련하여 인·허가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럼에도 굳이 특별법을 제정하여 토지이용 인·허가의 신청을 위한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전심의제도 등을 통하여 정식 인·허가와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지나치게 간소화하여야 할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이로 인해 토지의 인·허가가 쉽게 이루어져 토지의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을 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다.

4) 담당 검토 위원회 : 환경보건위원회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 개요

법안명(의안번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1905006)
소관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일자	2013. 5. 20.
대표발의	김정록(새누리당)
주요내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에 “도시철도 승강장에 전동차 출입문과 연동하여 열리고 닫히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를 포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 및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2) 검토의견 : 입법 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에 “도시철도 승강장에 전동차 출입문과 연동하여 열리고 닫히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를 포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 및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이 필요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소수자인권위원회

III. 기획재정위원회

1.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1900784)
소관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자	2012. 7. 20.
대표발의	정부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정부는 5년마다 서비스산업 발전에 관한 중,장기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서비스 산업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활성화▪ 서비스산업발전에 필요한 지원제도 근거마련

2) 검토의견 : 입법 반대

3) 주요 검토내용

○ 이 법률안은 제18대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하였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이 임기만으로 폐기된 것을 다시 제출한 것이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와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추진체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법률안 제1조 참조)

○ 그러나 이와 같은 목적 규정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현재 시행중인 ‘산업발전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 (산업발전법 제1조는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무엇보다 가장 문제인 것은 제2조 서비스산업의 정의규정에서 ‘의료’를 삭제하고, 서비스산업의 정의를 전부 포괄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게 하였다는 점임. 그리고 이와 같은 정의규정의 포괄위임으로 인하여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한다는 기존의 의혹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중되고 있음. 기획재정위 회의록을 살펴 보아도 기획재정부장관의 해명에 설득력이 부족함.

○ 결국 본 법률안으로 인하여 의료민영화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우려가 심히 중대하고, 기존의 산업발전법으로도 서비스산업 발전에 관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법안은 입법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생경제위원회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1911207)
소관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자	2014. 7. 17.
대표발의	나성린(새누리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차시장의 불안을 완화하고자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하인 경우는 한시적으로 3년간('14~'16년 소득분) 비과세하고 '17년 소득분 부터 분리과세 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임대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하여 주거용 건물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을 근로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자 하는 것임

2) 검토의견 : 입법 반대

3) 주요 검토내용

○ 주택임대소득과세는 과세의 형평성 및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한 필수적인 사항임. 따라서 그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시적 과세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이렇듯 불평등한 비과세 또는 과세유예 행정은 성실한 납세자들에 대한 조세저항 및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소규모임차인에 세부담완화라는 입법목적 또한 다음의 2가지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찬성할 수 없음. 첫째, 다른 소득에 대한 고려없이 연간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면 소규모임차인으로 의제하는 잘못된 전제에 서 있음. 둘째, 연간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의 경우 과세혜택이 절실한 소규모임차인이라는 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마치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는 전제로 논의를 시작하고 있음.

○ 법인세 소득세 30%감면은 준공공임대사업자 제도 정착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지만 같은 시기 양도소득세까지 100% 감면해준다는 것은 부적절함.

○ 조세의 핵심은 실질과세와 형평과세임. 분명한 소득이 있고, 현재도 법에 의해 납세의 의무가 있는 사안에 대해 법대로 집행을 하지 않은 그간의 관행은 잘못된 것임. 정부 또한 스스로 이러한 관행을 바로 잡고자 했다가 단순히 부동산가격 부양에 좋지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실질과세와 형평과세 원칙을 훼손하려는 잘못된 접근법을 보이고 있음. 장기적으로 조세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임대소득과세 현실화는 꼭 필요한 사안임.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생경제위원회 (조세재정팀)

IV.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일자	2012. 10. 22.
대표발의	정부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그 계획에 따라 마리나항만 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간주하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도모 ▪ 하천 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관리하는 자에게 토지의 점용료와 하천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투자자들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검토의견 : 입법 반대

3) 주요 검토내용

○ 박근혜 정부는 ‘해양 신성장동력 창출’을 국정과제 중 하나(인수위 국정과제 13번)로 정하고, 해양신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마리나 시설 확충 등 해양관광 기반을 확대하고, 산업연계형 R&D 지원을 통한 성과 확산을 도모하기로 밝힌 바 있고,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13. 8. 29. 마리나 시설 확충을 위하여 인천, 군산, 여수, 창원 등 전국 6개 지역에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조사 설계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음. 마리나항만 조성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로 23억여원이 투입될 예정임.

○ 본 개정안은 위와 같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1)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그 계획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간주하고, 2) 마리나항만시설에 ‘주거시설’을 새로이 규정하였으며, 3) 하천 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관리하는 자에게 토지의 점용료와 하천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1)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법적 근거인 공유수면매립법 등은 매립 결정이 행정부의 임의적 판단에 의존하고, 매립 완료 후에도 용도 변경이 용이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반환경적이라는 비판이 거세고, 이에 타 법률에 의한 의제 조항들을 삭제하여 공유수면매립시 환경적

측면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의제조항은 마리나 항만 조성이라는 산업적 이익을 환경보존의 가치보다 우위에 둔 것으로서 적절치 않음.

○ 또한 2) 본 개정안의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 취지와는 달리 항만시설에 주거시설이 포함되면서 선부른 부동산 거품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 본 법 제2조 제4호에 의해 주거시설 건설이 마리나산업단지 조성에 해당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적용에 따라 산업단지로서의 조세 감면과 같은 특혜를 받게 되는데 이는 관광진흥법에도 없는 특혜로서 부당한 측면이 있는 점, 마리나 산업은 고급해양레저스포츠로서 마리나항만지역 내에 주거시설을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자들은 일정 정도 이상의 재력을 보유한 자로 추정되는 가운데 주거시설 특혜는 오히려 부자를 위한 특혜로 변질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거시설을 마리나항만시설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끝으로 3)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민간투자자가 기존의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혜택에 더하여 하천법상의 토지 점용료와 하천사용료도 감면을 받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서 적절치 않음.

4) 담당 검토 위원회 : 입법감시TF

2.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5982)
소관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일자	2013. 7. 16.
대표발의	김재원(새누리당)
주요내용	동북아시아에서의 크루즈 시장이 확대되고, 크루즈 여객과 선박으로 인한 높은 부가가치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적 크루즈의 국내 기항을 더욱 확대하고, 국적 크루즈가 운항 경쟁력을 갖추고 크루즈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많은 고용과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크루즈 인프라의 구축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크루즈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 방안을 제도화하려는 것임.

2) 검토의견 : 입법 반대

3) 주요 검토내용

○ 박근혜 정부는 인수위 국정과제 17번 ‘물류·해양교통체계 선진화’와 81번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의 한 내용으로서 크루즈 산업 육성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본 법률안은 위와 같은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국내 크루즈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됨.

○ 본 법률안은 1) 크루즈의 정의, 2)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외국적 크루즈 유치 확대를 위한 보조, 4) 크루즈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각 법률의 특례 규정, 5) 크루즈 전문인력의 양성, 6) 크루즈산업 협회의 설립, 7) 크루즈산업을 위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위 내용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4) 크루즈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각 법률의 특례 중 「관광진흥법」의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를 규정하여, 선상 카지노업을 허가하였다는 점임.

○ 그 외에도 항만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에 드는 비용은 그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나 본 법률안은 이를 배제하고 있고,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적 크루즈 또는 외국적 크루즈 사업자에게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또는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에 국적 크루즈 모항 기능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과 물품을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본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세와 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조세 감면 혜택도 부여하고 있음.

○ 더 나아가 본 법률안은 외국적 크루즈 유치 확대를 위해 외국 크루즈사업자에 예산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외국 크루즈 사업자에게 오히려 국가 예산을 이용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음.

○ 결국 본 법률안은 크루즈 산업 육성 목적이라는 미명 아래, 카지노사업을 허가하고, 공유재산 및 국가예산을 공여하며, 조세감면혜택까지 부여하는 법안이라고 할 것임.

○ 이는 고용불안정에 시달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위한 정책과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고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될 것인지 정밀한 검토 없이 사행성 사업을 조장하는 것에 불과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입법감시TF

V.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 개요

법안명(의안번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906045)
소관상임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일자	2013. 7. 28.
대표발의	오영식(새정연)
주요내용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피한정후견인이 임원등으로 있는 법인을 결격사유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2) 검토의견 : 수정입법 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자격을 제한 내지 박탈하거나 공법상의 권리를 박탈하는 법규정들은 지적장애, 자폐, 정신장애, 치매, 기타의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사회활동참여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게 되어, UN 장애인권리협약에 위반함

○ 질병에 걸려 현실적으로 자신의 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례 중 유독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선임된 사람들만 공법상 및 사법상의 자격을 제한 내지 박탈하거나 공법상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이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여, 사회활동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므로, 이들의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게 됨

○ 절대 다수의 사안에서는 피성년후견인 등이 스스로 직업활동을 중단하거나 이해관계자가 피성년후견인 등의 직업활동을 중단시킬 것이므로 피성년후견인 등이 자신이나 제3자의 재산 또는 신체 및 생명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개정안이 기존의 한정치산자를 자격 제한 사유에서 제외한 것은 바람직하며, 더 나아가 피성년후견인도 자격 제한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함

○ 개정안은 전자문서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직접 관리·운영하는 인력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업무가 단순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성년후견인이 할 수 없게 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큼, 또한 동법에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등록심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지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소수자인권위원회

VI. 법제사법위원회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0852)
소관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일자	2014. 6. 12.
대표발의	정부
주요내용	<p>가. 대상사건의 축소(안 제5조 제1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중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제외. ▪ 대표적으로 공직선거법 제269조는 “선거법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은 「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합의부 또는 지원의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고 되어 있어 선거위반 사범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됨. <p>나. 검사의 국민참여재판 회부신청권 신설(안 제5조 제3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검사의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결정을 할 수 있음. ▪ 이 경우 법원은 결정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p>다. 검사의 국민참여재판 배제신청권 신설(안 제9조 제1항).</p> <p>라. 배제결정 사유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거나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으로 인정되는 경우(안 제9조 제1항 제4호) <p>마. 5인 배심제 폐지(안 제13조 제1항).</p> <p>바. 피고인의 최후 진술 후 검사의 재의견진술 및 피고인의 진술기회 부여(안 제45조의2).</p> <p>사. 변론 종결 후 배심원에 대하여 재판장이 설명할 내용 중에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외에 검사의 주장 요지도 포함(안 제46조 제1항).</p> <p>아. 다수결로 하던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을 배심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가중 다수결로 변경(안 제46조 제3항).</p> <p>자. 배심원 평의 배척사유 열거(안 제46조 제5항).</p> <p>평의·평결의 절차 또는 내용이 헌법·법률·명령·규칙 또는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는 경우</p> <p>평결의 내용이 논리법칙 또는 경험법칙에 위반되는 경우</p> <p>그 밖에 평의·평결의 절차 또는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p> <p>차. 평결 불성립시 배심원 평결 없는 판결 선고(안 제46조 제6항).</p>

	카. 배심원의 수, 배심원의 유·무죄 및 양형의견 판결서 의무적 기재(안 제49조 제1항).
--	-----------------------------------------------------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 반대

3) 주요 검토내용

○ 개정안은 국민참여재판의 확대라는 시대적 요청을 외면하고 오히려 그 대상을 축소하여 국민의 사법참여라는 제도 자체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이는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정치적 표현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일련의 사건에서 잇달아 무죄가 선고되자 이를 막으려는 법무부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경우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바, 표현의 자유를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는 직업법관의 경험이 아니라 일반 시민의 눈높이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더욱 필요함. 일례로, 안도현 시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경우 배심원들의 무죄 평결에도 불구하고 1심은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배심원 평결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여, 배심원의 평결이 더 합리적이었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음.

○ 검사에게 국민참여재판 회부신청권과 배제신청권을 부여하여 검찰의 권한을 강화한 것은 피고인의 권리로서 보장된 국민참여재판을 다른 당사자인 검사가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격이어서 국민참여재판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임. 검찰은 국민참여재판 회부신청권을 활용하여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하는 사건을 여론 재판화할 수 있고, 반대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나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 민감한 사건의 경우 배제신청권을 악용하여 국민의 참여자체를 봉쇄할 수 있게 됨.

○ 개정안은 피고인 등의 최후진술 후 검사에게 재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재판부로 하여금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적용법조 이외에 검찰 주장의 요지도 배심원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역시 피고인의 권리와 방어권 보장보다는 검찰의 주장을 더욱 관철시키려는 것임. 재판장의 실시 중에 이미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가 포함되어 검사의 주장이 그대로 들어 있음에도 검사 주장의 요지를 재차 포함시키려는 것은 검사의 주장을 이중으로 실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재판부의 배심원에 대한 실시까지 검사가 관여하여 그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으로 재판부의 권한 침해이자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소지가 있음.

○ 개정안은 ‘배심원의 평결 내용이 논리법칙 또는 경험법칙에 위반되는 경우’와 ‘평의·평결의 절차 또는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배심원 평결 배척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사유가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배심원 평결이 법관의 법감정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경우에 배척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배심원 평결을 장식화하고 무의미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음.

○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사유로서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거나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하여 매우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기준을 추가하고 있음. 피고인의 권리인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로서 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기도 하지만 그 요건 자체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함.

○ 개정안은 국민참여재판의 최종적인 형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에 의하여 구성된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결정하여 법무부에 송부한 안을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수정하여 발의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음.

○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는 확대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고 배제사유는 엄격히 제한하여야 하며,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유죄 인정에 신중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배심원의 수를 늘리고 평의의결정족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담당 검토 위원회 : 사법위원회

2. 재판과정 녹음 관련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1)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1910648) 2)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1910649) 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1910649)
소관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일자	2014. 5. 19.
대표발의	서기호(정의당)
주요내용	1) 민사소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가 기재를 청구한 사항은 조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함(안 제154조 제4호). ▪ 재판장의 입정부터 퇴정까지 재판의 전 과정을 녹음하도록 하며,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도 하도록 함(안 제159조 제1항). ▪ 변론의 내용 및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되, 조서가 없어졌거나 필수적 기재사항 중 녹음물의 내용과 명백히 배치되는 때에는 예외로 함(안 제158조). ▪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녹음, 영상녹화와 병행하여 속기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속기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속기록은 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로 대신함(안 제159조 제2항). ▪ 속기신청이 없고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내용 자체를 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9조 제3항). ▪ 조서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반드시 녹음물을 재생·청취하여 그에 따라 변론조서를 수정하도록 하고, 이의를

	<p>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함(안 제164조).</p> <p>2) 형사소송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관계인이 기재를 청구한 사항은 공판조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함(안 제51조 제1항 제12호). ▪ 재판장의 입정부터 퇴정까지 재판의 전 과정을 녹음하도록 하며, 검사, 피고인, 변호인으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영상녹화도 하도록 함(안 제56조의2 제1항). ▪ 공판내용 및 공판기일의 소송절차가 기재된 내용은 조서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되, 조서가 없어졌거나 필수적 기재사항 중 녹음물의 내용과 명백히 배치되는 때에는 예외로 함(안 제56조). ▪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녹음, 영상녹화와 병행하여 속기하도록 하고, 소송관계인들이 속기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속기록은 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로 대신함(안 제56조의2 제2항). ▪ 속기신청이 없고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내용 자체를 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의2 제3항). ▪ 검사, 피고인, 변호인으로부터 공판조서의 기재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녹음물을 재생·청취하여 그에 따라 공판조서를 수정하도록 하고,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조서에 이의신청의 내용과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의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54조 제4항). <p>3) 법원조직법: 재판의 비공개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녹음, 녹화, 속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안 제57조 제4항 신설).</p>
--	------------------------------------------------------------------------------------------------------------------------------------------------------------------------------------------------------------------------------------------------------------------------------------------------------------------------------------------------------------------------------------------------------------------------------------------------------------------------------------------------------------------------------------------------------------------------------------------------------------------------------------------------------------------------------------------------------------------------------------------------------------------------------------------------------------------------------------------------------------------------------------------------------------------------------------------------------------------------------------------------

2) 검토의견 : 입법 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현행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법정 녹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녹음 여부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거나 당사자가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거절할 수 있게 하는 등 결국 법원의 판단에 맡겨 그 취지를 반감시키고 있으며, 활용도 또한 미미한 실정임.

○ 그 동안 요약 방식의 조서 기재는 재판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정확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음. 또한 법관이 막말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더라도 기록이 되지 아니하여 사후에 적절한 징계처분 등을 하는 것이 어려웠고, 법관 스스로도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경계심이 약해짐.

○ 개정안에 의하여 재판절차 녹음을 의무화하며 녹음과 조서가 배치되는 경우 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을 배제하고 당사자의 이의에 따라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 확보, 법관의 부적절한 언행 등 방지에 의한 소송관계인의 인권 보장, 조서의 정확성과 재판절차의 효율성 도모 등에 기여할 것임.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사법위원회

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법원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 (1912415)
소관상임위	2014. 11. 11.
제안일자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	장윤석(새누리당)
주요내용	대법관 수의 2분의 1은 판사가 아닌 법조인(검사, 변호사, 교수 등) 중에서 임용함(안 제42조 제1항 단서 신설).

2) 검토의견 : 입법 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현재 대법관의 구성을 보면 법원 내에서의 기수·서열을 기준으로 남성 고위 법관 위주의 엘리트·보수적인 성향의 인사로 구성되어 있음. 이러한 획일적인 대법관 구성으로는 여성의 논리와 기득권의 가치관이 반영된 판결을 할 수밖에 없고,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고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는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움.

○ 근래에 대법원은 정책법원 기능 확보를 표방하며 대법원과 별도로 상고심 업무를 분담할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고법원은 그 소속 판사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지고, 법원 내 고위법관의 승진코스로 이용될 가능성이 많아서 오히려 획일적 엘리트 법관에 의한 상고심 재판을 강화할 가능성이 많음.

○ 개정안은 대법관 수의 2분의 1을 비 법관 중에서 임용하도록 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의 사회적 다양성을 보장하여 사법의 신뢰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임.

○ 다만, 실질적인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는 현직 검사 중에서 임용하는 대법관의 수도 제한할 필요가 있고, 그 밖의 비 법관 출신 대법관의 경우에도 대법관 임용 또는 추천일로부터 상당기간 판사나 검사의 직에 있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음.

○ 차후에 법원조직법 개정에 의하여 대법관 수도 증원하여 대법관의 과도한 사건부담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상고법원 설치가 아닌 대법관 증원은 상고심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위헌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상고심 개선방안이고, 최고법원으로부터 최종재판을 받

기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상고법원 설치시의 실질적인 4심제와 같은 추가적인 부담도 주지 않음.

4) 담당 검토 위원회 : 사법위원회

4.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892)
소관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일자	2014. 6. 17.
대표발의	이자스민 (새누리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래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등이 급증하여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내지 외국인 출신 이주자의 수가 많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로 수사과정에서 통역인과 번역인이 참여할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두어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사를 소통함에 있어서 매우 불편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외국인이나 외국인 출신 이주자를 위해서 피해자나 변호사 등의 청구가 있을 경우 수사과정에서 통역인과 번역인을 적극 참여시키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2) 검토의견: 입법 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외국인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한국여성 보다 성폭력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크고, 용기를 내어 신고를 한 경우에도, 조사과정에서 의사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반복조사를 받거나, 조서에 피해자의 진술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 성폭력 피해자가 외국인이거나 외국출신 이주자의 경우에는 수사과정에서 통역인과 번역인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결과적으로 실제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담당 검토 위원회: 여성인권위원회 (여성폭력방지팀)

VII. 보건복지위원회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1902903)
소관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자	2012. 12. 3.
대표발의	유재중(새누리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의무자의 범위에서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제외함(안 제2조제5호). ▪ 수급권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자에 대해 급여의 일부를 실시하고 있는 이행급여 특례 적용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이 급여의 일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상을 차상위계층에서 차상위계층 등으로 확대함(안 제7조제3항).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교육기관인 자활연수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5). ▪ 자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차상위자에 대하여 자활급여 신청, 확인 조사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수령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3조의2제1항). ▪ 급여 신청인에 대한 급여의 결정내용 통지 기한을, 금융정보 조회 등 급여결정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30일로 변경함(안 제26조제4항). ▪ 벌칙의 요건이 되는 종교상의 행위 강제를 종교의식을 행하게 하거나 종교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구체화함(안 제50조).

2) 검토의견 : 수정입법 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부양의무에 대한 변화를 고려하여 부양의무자 범위를 축소하여 보다 광범위한 국민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점은 긍정적인 점.

○ 하지만 개정안 제7조 제3항은 ‘차상위자’를 ‘차상위자 등’으로 수정함으로써 보장기관이 차상위자 외의 경우에도 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도록 변경함. 보장기관이 수급권자나 차상위자 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재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의 급여에 대하여도 재량권을 가진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경우, 수급권자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급여의 결정내용 통지 기한을 14일에서 30일로,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30일에서 60일로 변경함. 그러나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는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다 못해 생사의 기로에 놓

여 있는 경우도 많음. 기초생활급여 수급권 유무는 신속히 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 제26조 제4항 단서에서는 이미 '1.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4) 담당 검토 위원회 : 입법감시TF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1905233)
소관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자	2013. 5. 31.
대표발의	정부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내용 세분화(안 제10조제3항) ▪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안 제21조 및 제90조)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개선(안 제27조의2) ▪ 전문의 수련 중인 의사 등의 겸직금지 규정 마련(안 제77조제4항) ▪ 과태료, 업무정지의 중복 제재 개선(안 제92조제3항)

2) 검토의견 : 입법 반대

3) 주요 검토내용

- 본 개정안 중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을 명시하여 과거 의료인이 부당하게 의료기록의 열람을 거부하는 문제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시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하지만 본 개정안 중 보험회사로 하여금 외국인환자의 유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부분은 심각한 문제임
- 보험회사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알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보험회사와 병원이 직접 계약을 맺고 이를 통해 보험회사가 의료행위에 대하여 관여·통제하고, 영리적 의료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러한 사유로 그동안 보험회사의 환자유치알선 행위 및 직접계약이 금지되었으나, 본 개정안은 이를 허용하는 법안임. 이는 결국 영리목적 의료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영리목적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의 취지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것으로 보임.
- 의료기관과 보험업의 결합은 환자 정보 유출, 보험업의 이익증대, 병원의 영리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보험회사의 환자 유치·알선을 허용하였던 외국에서조차 이를 철회하려는 논의가 진행중임.
- 한국은 민간의료기관이 대부분이나, 비영리법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어 의료영리화가 제한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영리기업인 보험업이 의료기관과 결합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

를 발생시키게 됨. 의료기관-보험회사의 직접계약 및 보험회사의 환자 유치알선행위 허용은 현재 미국의 상업적 의료제도가 현재와 같이 민영화되었던 첫 단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의료법 개정안은 전반적인 보건의료제도의 상업화와 민영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임.

○ 비록 본 개정안이 유치 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매우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임. 즉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 또한 영리목적으로 이행되는 경우, 이 역시 의료법의 근본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의료기관의 영리목적 의료행위를 초래할 것임.

○ 또한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법 등에서의 처음에는 외국인에 한정되어 허용되었던 내용이 내국인까지 확장되었던 경우가 흔함. 즉 처음에는 보험회사의 환자알선 유치행위가 외국인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내환자에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큼.

○ 이에 더하여 본 의료법 개정안은 문화관광부가 같은 날 입법예고한 “관광진흥법 시행령[시행 2014.3.1.] [대통령령 제24884호, 2013.11.29., 일부개정]”과 연동되어 있음. 본 시행령은 ‘의료관광호텔업’이라는 관광진흥법 상의 숙박업을 신설하고 일정 수준의 해외환자 유치 실적을 갖춘 의료기관도 외국인환자를 위한 의료관광호텔을 세울 수 있도록 함. 사실상 자본력을 갖춘 대형병원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호텔 신설을 허용한 셈임. 이처럼 의료기관이 자신의 고유목적과 충돌할 수 있는 위락시설인 호텔업을 개설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고유목적과 충돌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반대함.

○ 더구나 병원이 진료 이외의 부대사업인 의료호텔업 등에 치중하게 되면서, 본연의 임무인 진료를 등한시 할 우려가 큼. 또한 의료호텔업은 ‘피부미용’ 같은 비보험진료나 ‘건강검진’ 같은 필수의료 외의 진료 확대를 가져올 수 있어 의료공급의 왜곡을 더욱 부추길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수치료, 아로마 치료 등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유사의료행위가 의료호텔업에 부수되어 행해질 수 있어 불필요한 의료비의 증가와 의료공급의 부정적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음.

○ 특히 ‘의료호텔업’은 내국인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앞서 밝힌 의료법 개정안과 연계하여 보험업이 ‘의료호텔업’을 개설하게 되면 사실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환자의 유치알선이 가능해 지는 것이며, 이는 전면적인 보험-병원 카르텔 허용의 효과가 나타남.

○ 한국은 현재도 의료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이 조차도 빅 5병원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거대병원의 숙박업인 ‘의료호텔업’ 이 허용된다면 의료 지역 불균등, 의료기관의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심해질 것임.

○ 따라서 의료기관의 영리목적 의료행위를 초래하고 보험업의 이익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입법감시TF

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995)
소관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자	2014. 4. 2.
대표발의	정부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의료 대상의 확대(안 제34조 제1항) ▪ 원격의료 실시기관의 신고(안 제34조 제2항 및 제5항 제2호) ▪ 원격의료 대상 환자 및 의료기관(안 제34조 제3항 및 제4항) ▪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안 제34조제5항) ▪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실시(안 부칙 제2조)

2) 검토의견 : 입법 반대

3) 주요 검토내용

- 현행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근간을 뒤흔들면서 본격적인 의료영리화·의료상업화의 출발점이 될 것임.
- 원격의료는 안전성이 전혀 입증된 바 없고 그 책임성도 담보할 수 없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고 오진의 가능성과 진단 누락 및 의료사고 발생 등 환자의 안전 위협뿐만 아니라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현상을 가속화시켜 동네의원의 몰락과 의료전달체계도 왜곡시킬 것임.
- 우리나라와 같이 1일 생활권인 나라에서는 오히려 대면 진료 활성화를 위한 방문 진료 확대가 필요하다며 의료인들조차 반대하고 있는 정책으로 통과시켜선 안되는 법안임.
- 위와 같은 의료의 질 하락, 의료사고 발생 등 환자의 안전 위협뿐만 아니라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현상을 가속화시켜 동네의원의 몰락과 의료전달체계도 왜곡시킬 것임.
- 원격의료는 재벌기업들이 유헬스 산업화라고 부르는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의 선결조건으로 재벌기업과 대형병원들의 수익 창출에는 기여할지 모르나 특히 이번 안에 장비도입 등의 예산 언급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원격의료장비 구축과 통신비 등으로 인해 의료비 폭등을 가져와 오히려 환자들의 부담은 더 가중될 것임.
- 또한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하게 아직까지 도서벽지 지역 중에서 광대역망이 구축되지 않은 소규모 마을이 많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런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일수록 원격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를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 나아가 원격의료를 통해 개인의 건강정보가 수집·가공될 수 있고, 이런 정보가 민간보험회사 등의 이윤추구 목적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입법감시 TF

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1909668)
소관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자	2014. 3. 12.
대표발의	김희국(새누리당)
주요내용	국제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경우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허용(안 제56조 제2항 제10호 단서)

2) 검토의견 : 입법 반대

3) 주요 검토내용

○ 현행법은 의료광고의 경우 의료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만이 할 수 있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등 일정한 내용의 광고를 제한하고 있으며, 방송 등의 매체를 사용해서는 할 수 없는 일정한 제약이 있음.

○ 위 개정안은 외국인 유치를 위한 과잉 광고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현행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고, 국내 의료기관 간 불필요한 경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 더구나 위 개정안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도 반대하는 법안으로서 의료의 공공성과 의료광고의 공익적 측면을 훼손할 위험이 높으며 오히려 국내 의료기관의 환자몰이 경쟁만 야기하고 외국인환자 유치라는 정책취지는 몰각시킬 가능성이 큼.

○ 위 개정안은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가 허용되는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여 제한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허용장소가 무분별하게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입법감시 TF

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1907242)
소관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자	2013. 10. 10.
대표발의	김희국(새누리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도가 낮은 의료기기 허가 및 신고 업무를 민간(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 위탁. ▪ 의료기기 제조허가를 제조허가와 제조인증으로 구분(안 제6조 및 제15조) ▪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서 의료기기인증원을 두고, 의료기기 인증 및 신고 업무를 수행토록 함(안 제42조, 제43조, 제44조)
------	-------------------------------------------------------------------------------------------------------------------------------------------------------------------------------------------------------------------------------------------

2) 검토의견 : 입법 반대

3) 주요 검토내용

- 결함이 있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인체에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하여 사망이나 회복이 불가능한 심각한 장애나 기능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
- 최근 안전성 및 유효성 관련 기준에 미달되는 부정·불량 의료기기가 불법 유통되는 등 의료기기의 제조 등과 관련된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진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료기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 보호가 최우선시 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위 개정안은 국민안전에 위협하는 법이자 의료영리화법임. 무엇보다 위해도 기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안정성이 요구되는 의료기기 허가사항을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며 의료기기 허가요건과 안전기준을 낮추려는 의료기기 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보임.

4) 담당 검토 위원회 : 입법감시TF

VIII. 산업통상자원위원회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890)
소관상임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일자	2013. 12. 30.
대표발의	정부
주요내용	<p>가.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의 완화(안 제8조의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일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개발사업시행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필요적 출자비율을 현행 10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완화함. ▪ 중소기업 개발사업자들이 특수목적법인을 통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됨. <p>나.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적합통보(안 제23조의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현행 사전심사제는 카지노업 허가 남발의 우려가 있음. ▪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공모를 통한 허가의 적합통보 제도로 전환하고, 허가의 적합통보를 위한 공모의 방법과 적합통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서 공모를 통한 적합통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p>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 특례의 조정(안 제2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의 폐기물 및 도로관리 등과 관련한 도시관리 업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경제자유구역개발과 투자유치 등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문제가 있음. ▪ 현재 시·도지사가 수행하는 관할 경제자유구역 내의 폐기물, 하수도, 공원, 옥외 광고, 도로 관리 등 경제자유구역 운영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도시관리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 내 도시관리 업무의 적절한 분담을 통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주요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p>라. 경제자유구역 통계의 관리(안 제28조의4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분석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통계를 작성·관리하

	고, 통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장에게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

2) 검토의견 : 입법 반대

3) 주요 검토내용

○ 개발사업자 자격요건 완화

- 개정안은 현행 법령상의 개발사업시행 대상자 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때,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갖춘 둘 이상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100% 출자하여야 하던 것을 50%를 초과하여 출자하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하여 글로벌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일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개발사업시행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현행 개발사업자 자격요건이 대기업 중심으로 엄격하여 건실한 민간 중소자본의 사업참여가 제약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소규모 개발사업자들이 특수목적법인을 통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검토보고서 인용)

- 그러나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개발사업자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투자를 활성화하려고 하기 전에 “왜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이 부진한지” 그 원인부터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¹⁾

- 또한 개발사업자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중견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나, 이미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자격요건을 완화한다고 하여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고, 오히려 보유 자본이 적은 중견기업이 경쟁적으로 개발사업에 참여한 후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업실패에 따른 매몰비용의 증가와 해당 사업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피해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음.

○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사전심사방식 변경 등

-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에 따르면, 개정안(안 제23조의3제8항부터 제14항까지)은 사전심사 청구제도가 현재 개별 민원처리방식으로 이뤄짐으로 인해 카지노 난립 가능성과 정책적 판단여지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고려에 따라, 사전심사를 받을 자를 공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임. 그리고 개정안의 ‘공모방식’이란 카지노업 허가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당 시·도지사 와 협의를 거쳐 허가 대상지역과 허가 업체의 수 등을 정한 후 사전심사를 받을 자를 공모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심사 신청이 이뤄진 경우 허가 적합 여부를 통보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임. 다만, 개정안에서 본허가 이전에 사전허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기존의 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과 별도로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허가 대상지역과 업체의 수를 정부에서 모두 정하는 방식은 아님. (검토보고서 인용)

- 위 개정안은 크루즈산업육성법과 함께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1) 규제 완화 및 실시계획 간소화 등으로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여 전체 98개 지구 중 52개 지구의 개발이 완료 또는 진행 중임. 다만, 전체 지정 면적 429km²의 56%인 242km²가 개발에 미착수

* 개발현황 : (완료) 19개 지구, (진행) 33개 지구, (미개발지) 46개 지구

그러나 카지노 사업을 통하여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국내에서의 지출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가 적절한 것인지 의문임.

- 현재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서울에 3개점, 부산에 2개점, 인천 1개점, 강원 1개점, 대구 1개점, 제주 8개점 총 16개점이 개설되어 있어 이미 충분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카지노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는 타당성이 없음. 또한 관광인프라 개발보다는 현실적으로 현금 수익 창출이 수월한 카지노사업을 육성하는 것이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하는 일인지 관광진흥정책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함.

- 카지노사업과 같은 사행성 사업 조장 분위기는 최근 한국마사회의 용산실내화상경마장 추진 움직임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난 바와 같음.

- 특히 선상카지노와 더불어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카지노가 난립하는 경우 수익성 악화에 따라 카지노기업이 내국인 출입 허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고 하여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발표(2008년)에 따른 한국의 도박 유병율(CPGI척도 기준)은 9.5% 수준으로서 영국(2010) 1.9%, 호주(2010) 2.4%, 뉴질랜드(2009) 1.7%, 미국(2011) 3.2%, 캐나다(2008) 1.4% 등 외국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편이이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임.

- 또한 공모를 통해 사전심사를 하여 허가 여부에 대해 적합통보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본허가 절차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카지노 난립을 막기 위해 사전심사를 한다면 필수적 절차로 규정하지 않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움.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생경제위원회

IX. 안전행정위원회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12334)
소관상임위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자	2014. 11. 6.
대표발의	정청래(새정연)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3월 11일 사상 최초로 전국 1360여곳 농축협, 산림조합, 수협에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가 위탁되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진행됨. ▪ 이 최초의 전국 농협 동시 선거가 정책선거·공명선거로 바꿀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거일 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2) 명함배부, 어깨띠 등 표지물 착용, 전화 등을 이용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안 제24조의3). (3)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1인 또는 여러 명을 단체가 초청하여 대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4)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1인 또는 여러 명을 언론기관이 초청하여 대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3).

2) 검토의견 : 입법 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2015년 3월 11일 사상 최초로 전국 1360여곳 농축협, 산림조합, 수협에서 이 법에 따라 선거관리가 위탁되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실시됨.

○ 하지만 현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공직선거법도 허용하고 있는 단체 또는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 및 민주적인 절차에 역행한다는 농업계 및 시민사회의 지적이 많음.

또한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을 일체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현직 조합장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비판이 높음.

○ 위 개정안은 단체 및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를 허용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조합원들의 올바른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민주

적 선거이자 정책선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그러므로 반드시 개정안 입법이 되어야 할 것임

4) 담당 검토 위원회 : 농협 조합장 전국선거 대응 및 연구 TF

2.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1911178)
소관 상임위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자	2014. 7. 15.
대표발의	진선미 (새정연)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5년 7월 5일부터 1987년 6월 30일까지 내무부훈령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에 의하여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되어 해당 시설에서 폭행·협박·감금·강제노역·성폭력 등을 당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은폐된 진실과 국가의 책임을 밝혀내고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및 제2조). ▪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과 국가책임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형제복지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둠(안 제3조). ▪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음(안 제8조 및 제11조). ▪ 진상규명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실지조사, 동행명령장 발부, 증거보전의 특례, 청문회 실시 등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위원회는 최초의 진상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하되,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안 제16조). ▪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는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주거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2) 검토의견: 입법 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소위 불량인에 대한 수용의 근거는 1975.12.15. 내무부 훈령 제410호로 발령한 ‘부랑인의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한 것이었는데, 훈령에 의하면 ‘일정한 정주가 없이 관광업소, 접객업소, 역, 버스터미널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곳과 주택가를 배회하거나 좌정하여 구걸 또는 물품을 강매함으로써 통행인을 괴롭히는 걸인, 껌팔이, 앵벌이 등 건전한 사회 및 도시질서를 해하는 모든 불량인’(제1장 제2절)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며, 심지어 ‘노변 행상, 빈 지게꾼, 성인 껌팔이 등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자들’을 준 불량인으로 규정(제1장 제3절 제6호)하여 불량인 대책에 준하는 단속조치를 하였다. 말하자면 이들은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었던 것임.

○ 다른 한편, 1981.4.10.자 전두환이 총리에게 보낸 지휘서선에 의하면, ‘총리 귀하. 근간 신체장애자 구걸행각이 늘어나고 있다는 바, 실태 파악을 하여 관계부처 협조하에 일정 단속보호조치하고 대책과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여, 전국적으로 불량인 검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하였고²⁾, 결국 내무부 훈령이 존속하는 전제에서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복지원 수용인원을 대폭 증가하게 하는 한편, 복지원의 수용, 감금을 정당화함으로써 반사적으로 인권침해가 대폭적으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임.

○ 복지원 내에서의 인권침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훈령에 의한 체포, 강제격리, 강제수용은 당시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범죄처벌법, 사회복지사업법, 생활보호법 등 그 어떤 근거에 있지 않은 것으로서, 오직 내무부 장관의 내부 업무지침인 ‘훈령’에 의한 것이었음.

○ 당시 유신 헌법³⁾에 의하더라도,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심문·처벌·강제노역과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할 자유(제10조 제1항)를 비롯하여 고문을 당하지 않을 자유(제2항), 영장에 의한 체포, 구금(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제12조)를 규정⁴⁾하고 있는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훈령’에 의한 체포·격리·구금 등은 당시 헌법에 위반되는 것임이 명백하며, 물론 헌법이 인정한 제 권리를 구체화한 형법, 형사소송법상의 제 규정을 위반한 것임을 재론의 여지조차 없다 할 것임.

○ 한편, 신민당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형제복지원은 부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체이며, 전체 예산의 80%를 국고 및 시비로 지원받고 있었’는데, ‘결산보고, 안전점검, 교육의 실효성, 원생에 대한 행정지도, 감사가 전혀 없’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관계공무원은 전혀

2) 김용원 변호사. 전계서 31면 참조

3) 대한민국헌법 [시행 1972.12.27.] [헌법 제8호, 1972.12.27., 전부개정]

4) 대한민국 헌법 [시행 1972.12.27.] [헌법 제8호, 1972.12.27., 전부개정] 제10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심문·처벌·강제노역과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금·압수·수색에는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구금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업무파악조차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예산 중 2년 동안 4억여원의 횡령한 사실을 보아도 ‘부산시의 명백한 직무유기임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음.

○ 당시 내무부 훈령에 의하면, ‘지 파출소 소장은 수용기관에 1주에 1회 순찰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이를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을 방치하였으며, 오히려 형제복지원과 유착되어 있다고 수용자들은 주장하고 있다’⁵⁾고 밝히고 있음.

○ 따라서 형제복지원을 비롯한 당시 복지원에의 최소한의 체포·강제격리·강제수용은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에 위반한 위헌·위법한 훈령에 의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위헌·위법적인 훈령에 근거한 위와같은 행위는 ‘국가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나아가 복지원내에서의 감금·강제노동, 그리고 폭행 등 가혹행위, 치사 등에 대해서는 적어도 관리감독의 소홀에 따른 책임지지 않을 수 없다⁶⁾ 할 것임.

○ 따라서 현재 피해자들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을 위해서 조속히 제청할 필요가 있음.

4) 담당 검토 위원회: 과거사청산위원회

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253)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1907794) 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1909063) 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1911504)
소관 상임위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자	1) 2013. 10. 11. 2) 2013. 11. 15. 3) 2014. 1. 14. 4) 2014. 8. 28.
대표발의	1) 진선미(새정연), 2) 이재오(새누리), 3) 강창일(새정연), 4) 김성곤(새정연)
주요내용	1) 2기 진실화해위 구성 2) 개정법 시행 후 2년 내 배·보상법 마련 3) 2기 진화위 활동 종료 이전 재단 설립 4) 소멸시효 특례 규정

2) 검토의견: 입법 촉구

- 5) 신민당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수용자들은 경찰이 자기들을 잡아오면 근무평점 5점, 형제원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밝히고 있다.
- 6) 형제복지원 내에서의 인권침해를 국가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냐와 관련해서, 관리감독의 범위, 형제복지원과 부산시 내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의 관계, 관리감독 행태 등 다각적인 조사 등을 통하여 밝혀야 할 부분이기도 하나, 적어도 관리감독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주요 검토내용

- 1기 진실화해위 활동 종료하였으나 진실규명 신청을 못한 유족들과 유해 발굴 및 봉안 등 미진했던 활동을 보완하기 위하여 2기 진실화해위 설립이 바람직함.

- 진화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거사연구재단이 설립되지 못하고 있어서 정부에 권고하였던 사업 등 후속 사업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재단 설립을 강제하고 재단의 사업 내용을 확대하는 규정이 필요함.

-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나 소를 제기하지 못한 유족이 많아서 배·보상법을 제정하거나 소멸시효의 특례를 인정한 필요가 있음.

- 4건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문제점을 반영하여 2기 진실화해위 설치(활동 기간은 3년 4년 혹은 5년 등 다양함)하여 진실규명신청을 하지 못하였던 유족이나 피해자에게 기회를 부여.

- 진실규명된 유족이나 피해자의 경우에는 후속조치로써 배·보상법의 제정이나 재단설립이 필요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과거사청산위원회

X. 여성가족위원회

1.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1731)
소관 상임위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일자	2014. 9. 17.
대표발의	이자스민 (새누리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에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여성 이주노동자 중 10.7%가 성폭행·성희롱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들에 대한 성폭력피해에 따른 서비스제공이 필요한 실정임. ▪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중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시설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들이 직장 등에서 성폭력을 당하더라도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일반보호시설에 입소하더라도 외국인으로서의 특수성 및 언어의 소통문제 등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류에 외국인보호시설에 대한 설치 근거를 둬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여성근로자 등의 성폭력 피해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들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제4호 및 제16조제1항4호 신설).

2) 검토의견: 입법 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외국인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한국여성 보다 성폭력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크고, 피해를 입는 경우에도 마땅한 주거지가 없어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어렵사리 쉼터에 입소한다고 하더라도 의사소통 및 문화차이에 따른 어려움이 있으므로, 외국여성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보호시설이 필요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여성인권위원회 (여성폭력방지팀)

지. 외교통일위원회

1.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902549)
소관 상임위	외교통일위원회
제안일자	2012. 11. 13.
대표발의	전해철 (새정연)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사할린동포가 적립하거나 납부한 저축금·미지불임금·보험금·연금 등의 상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사할린동포 및 국내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안 제5조).▪ 사할린동포는 강제동원 등과 관련한 피해 및 진상조사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사할린동포로서 귀국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무총리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지원결정을 받은 사할린동포 중 귀국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조속한 영주귀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국내정착 및 사할린동포의 국내 유족의 권익보호와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등 각종 정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1조).▪ 사할린동포에 대한 역사적 조명과 기념사업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할린동포지원재단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4조).

2) 검토의견: 입법 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정부는 1997년부터 영주귀국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영주귀국사업을 1945. 8. 15. 이전에 출생한 사할린 동포 1세에 한정하여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새로운 이산가족’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비인도적 처사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도 강제동원된 사할린 동포에 대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 중대하다는 점에서, 동반 가족을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로 확대한 것은 타당함.

○ 귀국 지원 뿐 아니라 사할린 현지에 잔류한 동포에 대한 지원도 중요한데, 잔류 동포를 위한 추도 및 기념사업과 잔류 동포의 생활안정 도모 등을 위해 사할린동포지원재단을 설립하도록 한 것은 타당함. 이와 관련하여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사할린 잔류 동포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사할린 동포가 사할린으로 이주하고 귀국하지 못한 역사적 배경, 정부가 귀환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왔던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 귀국지원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사할린동포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립하도록 하였는데, 지원사업 과정에서 외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간 업무협의 및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 것은 타당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과거사청산위원회

2. 양육비 관련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1)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950) 2)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126)
소관 상임위	외교통일위원회
제안일자	1) 2014. 6. 23. , 2) 2014. 7. 11.
대표발의	1) 남인순(새정연), 2) 김상희(새정연)
주요내용	1) 국외입양 사후관리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외입양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 25조제1항 단서 삭제, 국외입양의 경우에도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2) 가. 국외입양에서 문제 발생을 미연에 막을 수 있도록 해외이주허가서 발행조건을 강화(안 제19조). 나. 입양기관의 장이 해당 국가의 협력기관과 공조하여 입양아동의 적응 상태 및 양육 상황을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입양아동의 적응 상태 및 양육 상황이 그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입양정책 담당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를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5조). 다. 입양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처분을 강화(안 제 39조).

2) 검토의견 : 입법 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아동의 양육은 친생부모의 양육이 최우선이고, 입양은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국외입양보다 국내입양이 우선시되어야 함. 피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국외입양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국내입양을 성공시키지 못한 국가로서는 상응한 관리 책임을 저야함에도 불구하고, 국외입양이 된 이후에는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관리책임이라도 명문화하는 점에서 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함.

○ 현행법상 국외입양의 제한 사유는 미아이거나 친권자가 확인되지 않은 요보호아동으로서 보장시설, 입양기관에 보호된지 6개월 미만의 아동인 경우, 상대국과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전쟁상태인 경우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외이주허가서를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의 취지상 재량에 의하여 예외를 인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명백하게 해외이주허가서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함.

○ 현행법상, 국내입양의 경우에는 입양기관의 장에게 1년 동안의 사후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한 관찰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은 국외 입양의 경우에 면제해야 할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국외 입양의 경우에 사후 관리가 더 필요한 것이므로 이를 국외 입양의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위와 같은 관찰 및 서비스, 정보 제공 후 “입양아동의 적응 상태 및 양육 상황이 안정적인지 여부”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 역시 필수적이라고 할 것임.

4) 담당 검토 위원회 : 여성인권위원회(가족법연구팀)

XII. 정무위원회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사업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5502)
소관상임위	정무위원회
제안일자	2013. 6. 14.
대표발의	김재경(새누리당)
주요내용	<p>가.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및 과징금 부과근거를 신설함(안 제178조의2, 제429조의2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증권, 장내파생상품 또는 이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매매 등 여부 또는 매매 등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 거래의 체결의사 없이 주문을 과다하게 제출하는 등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함. ▪ 증권 또는 파생상품과 그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상장된 경우로서 가격 또는 권리행사나 조건성취 여부 등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 ▪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 이득액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p>나. 벌금 또는 몰수·추징의 필요적 병과 근거를 신설함(안 제447조제1항, 제447조의2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징역형을 처할 경우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함. ▪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을 하도록 함.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업무에 불공정거래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근거를 신설함(안 제402조제1항제4호 신설). ▪ 금융위원회는 체납 과징금의 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4조제4항 신설)

2) 검토의견 : 입법 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2013. 12.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 구기성)의 의견에 대체로 찬성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쟁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3886)
소관상임위	정무위원회
제안일자	2013. 2. 27.
대표발의	이재영(새누리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은 수급사업자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수급사업자에 대하여는 하도급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중소기업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대기업 등에 비하여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될 때 받은 각종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매출액 등도 중소기업일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러한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일부 부여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이에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에 있어서는 「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 중 연간매출액 규모 등이 상대적으로 작은 중견기업에게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을 보호·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1항 신설)

2) 검토의견 : 수정입법 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전문위원 임익상) 의견에 동의함. 특히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 보호 조항은 대금지급보장 부분 뿐만 아니라 전 조항이 확대적용되어야 할 것임.

구분	이재영의원안	수정의견
수급사업자의 범위	연간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직전 3년간 연간매출액의 평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적용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법 제13조(대금지급) • 제13조 위반시 벌칙조항 - 제25조(시정조치), 제25조의3(과징금), 제30조(벌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법 전 조항
중견기업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더 많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소속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

수급사업자 인정 요건	은 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	는 경우에는 매출액, 상시고용종업원 수와 무관하게 인정
		다른 중견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위탁을 주는 중견기업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 수가 더 많은 경우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공정경쟁팀)

XIII. 환경노동위원회

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1900032)
소관 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일자	2012. 5. 30.
대표발의	문재인 (새정연)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사사용인에 대한 적용예외 규정을 삭제.▪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물가상승률을 추가하고 최소한 전체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이상이 되도록 함.▪ 수습노동자,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감액적용 규정을 삭제.▪ 공익위원을 노·사단체 및 정부가 각각 3명씩 추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함.

2) 검토의견 : 입법 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가사사용인은 다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최저임금법 적용 예외의 대상으로 규정할 합당한 근거가 없으므로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정부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고 국가의 행정감독이 미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왔으나, 고용관계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생활이 아니며, 행정감독이 어렵다는 점은 그 감독을 실질화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문제임.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ILO 189호 협약)'에서도 가사노동자에게 다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문화하였음.

○ 현재 최저임금 결정의 최소기준이 없음. 최저임금결정 최저기준을 전체노동자 임금평균의 50% 이상이 되도록 그 하한을 정하는 개정안은 최저임금 현실화와 노동자간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적절한 방안임.

○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임금이므로, 수습노동자라고 할지라도 감액 적용이 되어야 할 합당한 근거가 없음. 현재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감액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지만(법 제5조 제2항 제1호 단서), 형식상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여 법 적용을 회피하는 경우도 많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취지상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수습 노동자 모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함. 따라서 단서로서 감액 적용 대상 범위를 줄일 것이 아니라 감액적용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정부는 노동생산성 및 노동강도가 다른 업무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에서 감시·단속적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감액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여 왔음. 그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이라는 점을 법제화(법 제50조 제3항, 2012. 2. 1. 개정)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시간의 처분권한이 사용자에게 있는 이상 근로시간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그 근로시간에 대해서 최저임금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음. 현재 시행령 부칙조항(대통령령 제23388호, 제2조)에 의해 2015. 1. 1.부터 최저임금 전액 적용이 예정되어 있으나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감액적용의 가능성을 두는 법률 자체가 정당성이 없음. 따라서 법률 자체에서 감액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함.

○ 최저임금 결정의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동수의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각 요구안을 제출하면 결국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함으로써, 공익위원에게 과도하게 결정권이 부여되어 있음. 그러나 정부가 공익위원들을 일방적으로 일명할 수 있어 공익위원들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음. 이에 공익위원 임명 과정에서 노·사 추천권을 인정하는 것은 권한에 맞는 독립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음.

○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최저임금법의 입법목적상(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 적용예외의 대상은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방향에 동의함. 추가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도 삭제하여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할 것임.

4) 담당 검토 위원회 : 노동위원회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1900464)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1901589)
소관 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일자	1) 2012.7.3. 2)2012. 9. 5.
대표발의	1) 심상정 (정의당) 2) 김경협(새정연)
주요내용	1) 심상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및 사용자 정의 개념 확장 ▪ 노동조합 등의 민·형사 면책 범위 확대 ▪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철폐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폐지 ▪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지 ▪ 직장폐쇄 별도 정의 및 요건 강화 2) 김경협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및 사용자 정의 개념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철폐 및 근로시간연제제도 폐지 ▪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지 ▪ 직장폐쇄 별도 정의 및 요건 강화
--	-----------------------------------------------------------------------------------------------------------------------------------------

2) 검토의견 : 입법 촉구

3) 주요 검토내용(내용이 거의 유사하므로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검토)

근로자 및 사용자 정의 개념 확장 (안 제2조 제1호·제2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종속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활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독립적 노동의 특성으로 인하여 노동관계법상 보호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왔음. 또한 1990년대 말 이후 노동유연화 정책에 편승하여 사용자는 일반고용 근로자 업무를 특수고용직화함으로써 노동관계법상의 책임을 회피하며 극단적 이윤 극대화를 시도해 왔고, 법원과 고용노동부 역시 근로자성 판단에서 인적 종속성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파악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 마련에 미흡하였음.

○ 다만 대법원은 근기법과 노조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양자의 근로자 개념이 상이하고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의 경우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님에 비추어 일시적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여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 8568 판결) 특수형태근로자의 노조법상 권리 보호를 위한 단초를 제공한 바 있음.

○ 국제노동기구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3권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또한 학계 다수의견은 인적 종속성이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의 필수적 요소가 아님을 긍정하고 있으며 위 판례도 근기법에 비해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넓게 보고 있음. 따라서 노조법상 근로자 정의 개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자 및 노조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여 단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를 포함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향유하도록 함이 타당하므로 위 개정안에 동의함.

[사용자성 확대]

○ 근기법상 직접고용 원칙에 대한 합법적인 예외로써 근로자파견법이 제정된 이후 간접고용은 사용자의 책임 회피 및 비용절감을 위해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과 같은 변태적 형태로 확산되어 왔음. 고용관계와 사용관계가 분리되는 간접고용의 특성상 누가 노동법상 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따라서 단순히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를 규율하는 것만으로는 간접고용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 따라서 근로계약의 사실적 존부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취업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도 단체교섭상의 사용자로 볼 필요가 있음. 위 개정안에 의하면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원청업체의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하여 간접고용 근로자의 실질적인 노동3권 보장이 가능하므로 위 개정안에 동의함.

□ 노동조합 등의 민·형사 면책 범위 확대 (안 제3조 및 안 제4조)

○ 노동조합 등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⁷⁾는 2010년 10개 사업장 311억5천8백만원에서 2013년 26개 사업장 1,510억2천6백만원으로 급증하였는데, 사업장수 증가에 비해 손해배상청구 금액 규모가 살인적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이는 사용자가 특정 쟁의 사업장을 표적으로 삼아 노조탄압의 본보기로 활용하고 있다는 간접적 증거임.

○ 법원은 정당한(‘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노조법상의 민사상 면책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노조법은 쟁의행위의 주체, 절차, 방법 등을 매우 제한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법원도 고유한 판례 법리를 내세워 쟁의행위의 정당성 특히 사용자의 경영사항이나 정부의 정책사항 등을 이유로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광범위하게 부정하고 있어, 민사상 면책이 적용되는 범위가 매우 좁음. 따라서 사용자는 이를 악용하여 노조나 노조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나 가압류신청을 제기하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더욱이 노조 무력화와 보복 차원에서 노조간부에 대한 악의적인 손해배상청구나 가압류신청이 고귀한 목숨들을 앗아간 비정한 현실도 잊을 수 없음.

○ 따라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을 삭제하여 폭력·파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만 인정하고, 다수결 원리에 의해 형성된 단체의사에 구속될 수 밖에 없는 조합원 개인에 대해서는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한 개정안은 노사간 대등한 지위 보장 및 노동3권의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에 동의함.

○ 다만, 쟁의행위의 목적을 둘러싼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고 사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안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에 대해서까지 민사상 면책이 주어지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노조법 제2조 제4호의 목적, 즉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을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에도 민사상 면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하여 노사 간에 절충점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단체행동권은 근로자의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쟁의행위에 폭력이나 파괴행위와 같은 위법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너무나 명백함. 대법원도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위력의 개념을 다소 제한적으로 해석하면서 단순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판시를 한 바 있음.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 그러나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은 필수공익사업이라는 점과 거액의 영업수익 손실을 핑계로 파업일정을 미리 예고했고 철도공사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기존의 판결을 합리적 이유없이 무시하는 자의적 판결을 선고하였음(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등).

○ 이는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후속 판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의적인 법적용이 자행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 여전히 현저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이러한 현실에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노무 제공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일체의 형사상 책임을 면제시킴으로써 헌법상 권리를 보호하는 노동법적 확인이 절실하므로 위 개정안에 동의함.

□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철폐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폐지(안 제24조 제2항 내지 제5항 삭제, 안 제42조의2 삭제)

7)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에서 2014년 6월 심상정 의원실로 회신한 자료에 근거함. 사업장수는 중복됨.

○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는 단지 노조 전임자 축소 문제를 넘어 노사 자치주의의 훼손과 단체협약 파괴 등의 총체적인 노조탄압 방식으로 악용되어 극심한 노사대립 문제를 낳고 있음. 더욱이 정부는 이러한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임의 해석하여 노사 자유의사에 의해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남발하여 개별 노사관계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음.

○ 현재는 타임오프제 등 도입의 입법목적은 노조의 자주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실시한 바 있으나(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0헌마606),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노조의 자주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근로시간면제제도로 인한 풀타임 전임자 감소가 사용자의 교섭해태나 불성실 교섭, 부당노동행위를 부추기어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한편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도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이 입법적 관여 사항이 되지 않게 하고 노사가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권고한 바 있음. 따라서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하여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철폐되어야 하므로 위 개정안에 동의함.

□.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지(안 제29조 내지 제29조의5 삭제)

○ 현행 노조법 규정은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친 교섭대표에게만 교섭당사자 지위를 부여하여 소수노조의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여 노조 기능을 봉쇄함으로써 실제로 단결권마저 부정하는 효과를 낳고 있음. 또한 사용자 동의에 의해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율교섭을 불가능하게 하고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행사 여부가 사용자의 처분에 따라 좌우되는 권리의 전도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높음.

○ 한편 산별노조와 과반의 기업 어용노조가 함께 있는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의 교섭창구단일화를 강제는 산별교섭을 무력화시키고 산별노조를 형해화 시킬 가능성이 큼. 노조운동이 기업단위로 회귀하게 된다면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사회·경제적 지위 악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며 노동운동의 주요 주체로써 역할을 담당해 온 산별노조운동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음.

○ 더욱이 소수노조 보호를 위해 도입한 공정대표의무제는 법적 강제가 없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소수노조 권리 보호에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합원 선정, 이의제기 처리, 공정대표의무 이행 감독 등의 주체를 노동위원회로 정함으로써 전문성 부재 문제 및 정부 차원의 부당한 지배개입이나 노조탄압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이 와중에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으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이후 신설된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쟁의권을 전면 박탈하여 사용자의 교섭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 단체교섭권은 헌법에서 부여한 근로자의 권리이고, 국제노동기구도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하여 교섭방식은 해당 국가의 구체적인 노사관계와 노사문화 등에 따라 노사정간 충분한 논의와 합의로 결정할 문제임과 소수노조의 교섭권에 대한 충분한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입법을 강행한 현행 노조법 규정은 우리의 노사관계나 문화에 맞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노사정간 충분한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써 복수노조 허용을 통한 노조설립의 자유 보장이나 국제기준 준수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임.

○ 결국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행사를 제한하는 위헌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폐지하고 복수노조가 자율 교섭하는 형태로 노조법

이 개정되어야 함. 따라서 위 개정안에 동의함.

□ 직장폐쇄 별도 정의 및 요건 강화(안 제2조 제6호 및 제7호, 안 제46조)

○ 직장폐쇄를 사용자의 쟁의행위로 명명하는 현행 노조법 규정은 쟁의행위가 헌법 제33조의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서 연유하고 사용자의 소유권이나 경영권에 우선하여 특별 보호를 받으며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못함. 따라서 별도로 직장폐쇄의 정의를 규정하는 개정안에 동의함.

○ 최근 직장폐쇄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 목적에서 벗어나 사업장 출입 봉쇄와 강제 퇴거, 비조합원과 파업불참자를 통한 조업 실시, 용역경비의 사업장 투입 등을 통해 사실상 노조의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키는 공격적 직장폐쇄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 더욱이 시설보호 등의 명목으로 구사대나 용역강패 등을 사업장 내외부에 배치하여 노조와 물리적 충돌을 일으켜 부상자를 발생시키고 평화적인 해결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법원도 직장폐쇄가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와의 형평상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음.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7도5204 판결)

○ 그러나 노동현장에서 사업주가 직장폐쇄를 악용하여 조합원의 정당한 사업장 내 체류를 막거나 허용된 범위 내의 단체행동이나 쟁의행위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따라서 공격적 직장폐쇄를 금지하고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입법화함이 타당하므로 위 개정안에 동의함.

□ 필수공익사업 및 필수유지업무제도 폐지, 최소유지 업무 신설(안 제42조의2 내지 제42조의6 삭제, 안 제71조 제2항 삭제, 안 제71조의2 신설)

○ 노조법은 긴급조정제도와 강제중재제도를 통하여 행정관청이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여 파업권에 대한 사전적 통제장치를 별도 도입하였음. 이는 다른 입법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중복적 규제임. 더욱이 현행 노조법 시행령은 필수공익사업의 주된 업무 대부분을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상적으로 열거하며 사전적으로 필수유지업무를 설정하여 사실상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와 수준 결정에 노조의 우선권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노동기구 기준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며 필수공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임.

○ 한편 국제노동기구는 파업이 제한되는 '필수서비스'에 관해 '그 중단으로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명, 신체적 안전이나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여 단체행동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음에 비해, 노조법은 필수유지업무의 개념에 '공중의 일상생활'도 파업 제한 요소로 삼음으로써 필수적이어야 할 업무가 공중의 일상생활에 대한 것으로 환원되는 모순을 낳고 있고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지나치게 손쉽게 제한하고 있음.

○ 따라서 필수공익사업 및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폐지함이 타당함. 다만 공익사업의 업무 중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 또는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고 그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불가결한 업무에 대해서 최소유지업무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취지의 위 개정안에 동의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노동위원회

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1900465)
소관 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일자	2012. 7. 3.
대표발의	심상정(정의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 확대 ▪ 간접고용 제한 및 간접고용형태 차별처우 금지 ▪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확대 ▪ 사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이전 명문화

2) 검토의견 : 수정입법 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의 확대

○ 특수형태고용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방안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입법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음. 우리사회는 특수형태고용 근로자의 보호가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입법적 해결을 도모하지 못한채, 사법적 구제로 문제를 봉합해왔을 뿐임.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는 입법을 통해서 특수형태고용 근로자를 보호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타당함.

-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및 영향력이 있는 자’를 포섭하고 있음. 현행 근로기준법은 도급사업에서 부분적으로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부분적으로만 인정하여왔는데, 이를 정의규정을 통해서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근로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타당한 의율이라고 판단됨.

○ 간접고용제한 및 간접고용형태 차별처우 금지 (안 제9조의 2)

- 노동법은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직업안정법」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간접고용을 허용하고 있을 뿐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양한 형태의 간접고용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본 개정안은 상시적 업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직접고용원칙을 천명하고 있고(안 제9조의 2) 아울러 간접고용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고용의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방안으로 보여짐.

- 한 편 본 개정안은 ‘간접고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기 때문에 차제에 ‘간접고용’

에 관한 정의규정을 포함하는 보완이 필요할 것임.

○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확대 (안 제11조)

- 근로기준법은 그 적용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온 역사였음. 본 개정안은 오랜 기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5인 이하의 사업장 등에 대해서도 적용을 확대 하긴 위한 것이므로, 그 근본적인 취지에는 찬동함. 특히 동거친족 및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도 근로로서 평가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은 ILO에서도 ‘가사사용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채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입법과제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음.

- 다만 근로기준법의 실효적 규제를 위하여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다소 조정하거나, 가사사용인의 경우 근로특성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는 규정이 보완될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보임.

○ 사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이전의 명문화 (안 제42조의 2)

-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사업양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나, 사업양도에 따라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근로관계의 이전에 관해서 그동안 우리 입법은 미비한 채, 판례에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해왔음. 사업양도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대법원의 판례 역시 같은 입장을 취해왔으나 최근 사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양도계약이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보호가 약화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는 상업상 영업양도와 노동법상 영업양도에 대하여 판단을 달리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입법적 결단을 미룰 수는 없다고 판단됨. 본 개정안의 취지에 원칙적으로 찬동함.

4) 담당검토위원회 : 노동위원회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 (의안번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1901513)
소관 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일자	2012. 9. 3.
대표발의	은수미 (새정연)
주요내용	▪ 간접고용 정의규정 신설 ▪ 간접고용 금지규정 신설 ▪ 간접고용 금지규정 위반시 고용간주 규정 신설 ▪ 도급사업에서의 사업이전에 의한 해고의 제한

2) 검토의견 : 입법 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상시적 업무에서의 간접고용금지 등

- 현행 근로기준법이 명문으로 중간착취의 배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고, 「직업안정법」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용 현실은 다양한 형태의 이름으로 근로기준법의 직접고용 원칙이 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본 개정안은 간접고용의 개념을 정의(안 제2조 제1항 제9호)하고, 간접고용에 대한 원칙적 금지를 명문화(안 제9조 제2항)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위반할 경우에 사용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는 고용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안 제9조 제3항)는 점에서 의의가 큼.
- 국회 입법검토보고서에서는 간접고용을 금지하기 보다는 파견법이나 직업안정법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지만, 이는 그동안의 고용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실효적 규제 방안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없음.

□ 사업이전에 의한 해고의 제한 (안 제23조의 2)

- 본 개정안은 도급사업의 경우에 사업이전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새로운 사업주가 기존 업체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의 신설을 제안하고 있음. 우리 노동현실은 하도급 업체에서 근로조건 개선의 위하여 노동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사용자 포섭될 가능성이 높은 원수급업체가 형식적으로는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문제해결을 회피하고 있는 현실에서 타당한 입법이라고 여겨짐. 아울러 본 개정안에서 담고 있는 도급계약에서의 사업 이전 뿐 아니라 영업양도 등의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승계 문제에 대해서도 입법적 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해둠.

4) 담당검토위원회 : 노동위원회

5. 산업안전보건법지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산업안전보건법지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1905659)
소관 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일자	2013. 6. 26.
대표발의	심상정 (정의당)
주요내용	▪ 산업안전 관련 법령의 실효성 제고 및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 책임 가중 처벌

2) 검토의견 : 입법 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제정의 필요성

- 현재 산업안전에 관련하여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처벌 규정 등이 존재하고 있으나 그 위반 행위에 대한 기존의 처벌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법의 실효성이 없음. 또한 안전문제를 하청업체로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도 문제가 되고 있음. 이러한 실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존 형사법 체계로 규율하기 어려워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은 동법 제1조에 명시된 것처럼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사망 사고를 비롯한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처벌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은 아님.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내에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그 형량을 강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둘째,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산업안전보건범죄만을 특정하여 규율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벌조항을 일률적으로 강화할 수도 없고 산재 사고에 맞추어 처벌요건이나 처벌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음.
- 셋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나 행정적 제재를 형사법 체계에 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산재사망 사고 규정

- 제정안 제3조는 산업안전보건범죄를 범하여 근로자나 종사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행 산안법 66조의2에도 산재사망 사고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이 규정은 사업주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형량이 낮은 편임. 또한 이 규정은 직접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임.
- 따라서 사업주의 경우에 형량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입법의 필요성이 있음.

□ 과실범

- 제정법 제4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산업안전보건범죄를 범하여 근로자 또는 종사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는 동법 제23조(안전조치의무) 제1항 내지 3항 위반과 제24조(보건조치의무) 제1항 위반으로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만을 처벌하고 있는데 제정법 제4조는 그 범위를 넓힌 것으로 산재사망사고의 처벌범위를 확대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처벌의 공백을 메우고 산재사망 사고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있음.

□ 집행유예 결격기간

- 제정안 제5조는 집행유예 결격기간을 5년으로 하여 형법상 집행유예 결격기간 3년보다 가중하고 있음. 현재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음. 따라서 재범자에 대해서만이라도 가중하여 처벌할

입법의 필요성이 있음.

□ 징벌적 손해배상

○ 제정안 제7조는 산업안전보건범죄로 처벌받은 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3배 이상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이 부분은, 그 취지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우선 원고가 손해의 3배 이하로 청구할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3배 이상 손배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닐 것으로 봄. 원고가 항상 손해의 3배 이상을 청구해야만 한다는 규정도 아닐 것임. 이는 처분권주의에 반한다는 문제가 있음. 그렇다면 원고가 손해의 3배 이상을 청구할 경우에 그러한 청구가 가능하다는 규정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의문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더라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처럼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타당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및 도입시 책임 정도에 대해서는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행정적 제재

○ 제정법 제8조에서는 산업보건범죄로 처벌받은 자에 대한 허가나 면허의 취소, 영업정지, 기타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중대한 산재 사고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해 사고 발생 이후에 그에 합당한 행정상 제재가 없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행정제재를 담은 개정안은 입법의 필요성이 있음.

4) 담당 검토위원회 : 노동위원회

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1905159)
소관 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일자	2013. 5. 28.
대표발의	한정애 (새정연)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위험작업의 사내도급 원칙적 전면금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의무 추가 및 적용 대상 확대, 행정적 제재 강화, 산재사망 사고의 형량강화 및 구성요건 신설, 양벌규정에서 법인 또는 개인의 벌금 상향 등

2) 검토의견 : 입법 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유해·위험작업의 사내도급 원칙적 금지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는 위험작업의 도급금지라는 표제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작업의 경우에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임(동조 제1항). 법문의 형식으로 보아 위 조항은 도급금지 조항이라기보다는 인가를 요건으로 한 도급 허용 조항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실질적으로도 위 조항은 도급의 광범위한 허용조항으로 기능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 조항이 인가대상 작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이 인가대상을 십수년째 도급, 수은 등 몇몇 작업에 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외의 유해·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인가조차 필요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 이에 대해 개정안은 도급작업 등 일부 유해·위험 작업의 상시적 사내도급을 전면금지하고, 일시적·간헐적 작업 또는 도급인의 사업장 밖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급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최근 늘어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따라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유해·위험 작업을 수행하던 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도급인이 직접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실상 도급금지라는 표제를 무색케 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한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도 유해·위험 작업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파견근로가 아닌 사내도급의 형식일지라도 유해·위험작업의 책임을 외부로 떠넘기는 행위는 금지되어 마땅함.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유해·위험작업의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타당함.

□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의무 추가, 적용 대상 확대 등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사업주에게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일정한 요건 하에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그 요건으로 i)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일 것, ii)일부 분리 도급 사업일 것, 또는 전부도급일 경우에는 전문분야일 것, iii)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일 것을 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개정안은 안전·보건조치 의무의 내용을 추가 확대하면서, 위 ii)요건을 삭제하여 제29조의 적용 대상 사업을 확대하였음. 그러나 적용대상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은 그대로 두었음.

○ 개정안에서 ii)요건을 삭제한 것은 도급사업주의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도급사업주의 책임 강화라는 요청에 비추어 타당함. 다만 적용대상 사업을 여전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두고 있는 부분도 삭제하여 전 업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현재의 시행령에서는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있음(시행령 제26조 제2항). 나아가 현행법 제3조 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2조의1 별표1에서는 제29조의 적용제외 사업을 규정하고 있어 이로 인해 원자력 관련 작업, 선박관련 작업, 서비스업 등 마땅히 규제되어야 할 대상 적용제외 되어 있는 문제도 있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하는 추가적인 개정작업이 필요해 보임.

○ 한편 개정안은 도급인이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처벌을 확대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새로 추가된 의무인 제23조 및 제24조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안제 67조), 그 외의 위반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음(안제72조). 이는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에 부합하고 특히 제23조 및 제24조의 의무 위반의 경우 도급인에게도 벌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행정적 제재 강화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의2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에게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행정제재로서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라고만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를 ‘허가·면허의 취소, 등록의 말소, 영업정지 또는 그 밖의 제재’로 확대, 강화하였음. 중대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행정적 제재가 마땅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 개정은 타당함.

□ 산재사망 사고의 형량강화 및 구성요건 신설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산재사망 사고의 벌칙 규정(제66조의2)을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징역의 경우 10년 이하로, 벌금의 경우는 10억원 이하로 현재보다 형량을 강화하였음(개정안 제66조의2 제1항). 또 위 죄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범한 사업주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3배)을 신설하였음(제2항).

○ 현재의 산업재해 관련 처벌이 매우 미미한 것이 현실임.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형량을 강화하고 구성요건을 신설함으로써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개정안 제66조의2 제1항은 구성요건으로 앞서 본 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을 포함시켰는데, 대법원이 산재사망 사고에 대해서 제66조의2 적용을 배제해왔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개정임.

□ 양벌규정에서 법인 또는 개인의 벌금 상향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는 양벌규정으로서,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형량과 이들을 고용·선임한 법인 또는 개인의 형량을 구별하지 않고 양자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개정안은 산재사망 사고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2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여 형량을 분리, 강화하였음. 이는 산재사망 사고에 대하여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산업재해율을 경감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 타당함.

○ 산재사고는 사업주가 무리하게 비용을 줄이고 이득을 얻으려는 이유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로 인해 이득을 얻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산업재해의 궁극적 원인에 대한 책임으로서 책임주의 측면에서 어긋날 것이 없고 효과면에서도 가장 실효성 있는 처방이 될 것임.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기업에 대한 벌금 액수가 지나치게 낮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그것은 현행법의 양벌규정이 다른 법률의 양벌규정과 같은 형식(본범과 동일한 형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임.

○ 일반적인 양벌규정은 본범의 행위에 대해 법인의 관리감독 상의 책임을 추궁을 묻는 것이 주목적인 반면, 산업재해와 관련하여서는 법인에게 그 이익의 실질적 귀속주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도 하며, 나아가 그 이익추구를 위해 산업재해 발생의 환경을 조성한 책임을 추궁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도 함. 따라서 산업재해와 관련한 양벌규정의 경우에는 여타의 양벌규정과 다른 형식으로 규정될 입법정책적 필요성이 있음. 개정안과 같이 산재사망 사고와 같은 중대 산업재해에 대해서 기업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 역시 입법정책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으며, 그 실효성의 측면에서 필요함.

○ 다만 입법기술적으로는 주의를 기울여할 부분이 있어 보인다. 위 규정을 개인에게 적용하면 의문인 점이 있기 때문임. 우선 개인을 보면 개인이 직접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를 발생시키면 10억 이하의 벌금(개정안 66조의2)에 처해지는데 개인의 종업원 등이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개인에게 20억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개정안 71조). 직접 범하면 10억, 종업원 등 다른 자가 범하면 20억. 아무리 산재사망 사고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형량상의 불균형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법인의 경우에는 직접 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개인의 경우 형량상의 불균형이 있을 수 있음. 위 범조항에서 개인을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 개인인 사업주와 법인인 사업주를 차별 취급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을 지 의문임.

4) 담당 검토위원회 : 노동위원회

7. 근로기준법 일부법률개정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1906946)
소관 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일자	2013. 9. 23.
대표발의	은수미(새정연)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 등의 경우에도 일반근로자와 같이 임금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적도록 함 ▪ 근로자의 임금대장 열람·복사 청구권을 명시함 ▪ 사용자의 임금명세서 서면 교부를 의무화함

2) 검토의견 : 입법 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임금대장을 기재하는 근로자 범위의 확대 : 현행 법령에 의하면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근로기준법 제63조 해당사업장의 근로자는 임금대장에 기재된 사항만으로 임금이 산출된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이들도 일반근로자와 같이 임금대장에 기재하는 사항을 동일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음.

○ 임금대장 열람·복사 청구권 명시 : 임금대장 기재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

하고 임금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임금대장 열람·복사 청구권을 법에 명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임금명세서 서면 교부의무 명시 :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임금은 지급되는 데 그 상세 명세서는 교부되지 않거나,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자신이 수행한 노동시간과 받아야 할 임금이 법정 기준대로 정확히 계산되어 지급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한 임금명세서가 지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그럼에도 현행 근로기준법은 처음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외에는 임금대장과 별도로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수행한 노동시간과 임금산정의 내역이 정확히 기록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그리하여 사용자가 임금 산정을 엉터리로 하여 실제 받아야 할 임금보다 적게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를 바로 잡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자신이 일한 노동에 대하여 자신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노동자의 알 권리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그리고 헌법 제32조제3항 헌법 제32조 제2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너무나도 당연한 기본권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임금명세서 서면교부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함.

○ 민변 노동위원회는 2013. 6.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같은 해 9.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하였음. 위 발의안은 민변 노동위원회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서 반드시 입법되어야 할 것임.

4) 담당 검토위원회 : 노동위원회

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1962)
소관 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일자	2014. 10. 2.
대표발의	권성동(새누리당)
주요내용	1. 근로기준법상의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휴일근로 가산임금 삭제. 2. 연장근로시간 한도 1주 20시간으로 확대. 3.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2주 및 3개월에서 1개월 및 12개월로 각각 확대 4. 법률에 통상임금 정의 규정을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 5.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귀향여비 지급 의무규정 삭제.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 반대

3) 주요 검토내용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휴일근로시 가산임금 지급근거규정 삭제

○ 근로기준법 제56조에는 가산임금의 지급대상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 이는 위 각각의 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이유와 취지가 각각 다르기 때문. 또한 “1주”가 휴일을 포함한 연속한 “7일”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해석이며 근로기준법에 이를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음.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넘는 휴일근로는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위 조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또한 중첩되어 지급되어야 함.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하급심 판례 또한 같은 입장임(대구지방법원 2012. 1. 20. 선고 2011가합3576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9. 선고 2010나50290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9. 4. 선고 2012나61504판결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에서 휴일은 제외된다고 해석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휴일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아 가산임금 중첩지급 의무가 없다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행정해석을 계속 유지하여 옴. 개정안은 더 나아가 노사관행, 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하여 휴일근로시 가산임금 지급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기존 판례에 의해서도 인정되어오던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중첩지급의 근거를 없앴을 뿐 아니라,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는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 지급의 근거 또한 없애는 결과를 초래함. 이는 근로자의 임금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법제화하려는 시도로 입법에 반대함.

□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종전 12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기준법 50조의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 따라서 위 규정들에 의하면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은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임.

○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1주”에서 휴일은 제외된다고 해석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68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휴일(무급·유급휴일 각각 1일)근로시간 16시간)으로 보고 있음. 개정안은 “1주”를 “7일”로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의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20시간으로 확대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60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20시간)으로 축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52시간에서 60시간으로 8시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옴. 따라서 위 개정안은 근로시간의 축소라는 최근의 흐름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입법에 반대함.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상한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서는 취업규칙에 의한 경우 2주, 동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한 경우 3개월로 규정.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근로시간의 제한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한도의 확대는 실질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의 빈도를 확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옴. 따라서 위 개정안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설

정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연장근로수당이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입법에 반대함.

□ 통상임금의 정의규정 신설 및 대통령령에 의한 통상임금 제외

○ 통상임금은 각종 근로수당의 산정기준으로서 그 개념정의를 명확할 필요가 있음. 종래 통상임금의 개념에 대한 대법원의 정의가 있었으나 그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있었음.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정의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개정안은 대법원의 위 해석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서 위 단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개념의 명확한 정의라는 정의규정의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의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을 규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는 행정부에 의한 자의적인 통상임금 축소를 가능하게 함. 따라서 위 규정의 신설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인 근로자 보호에 반하는 것으로 입법에 반대함.

□ 귀향여비 지급규정 삭제

○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은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 개정안의 주장과 달리 귀향여비의 지급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을 통한 금전배상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음. 따라서 위 규정의 삭제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인 근로자 보호에 반하는 것으로 입법에 반대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노동위원회

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10789)
소관 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일자	2014. 6. 3.
대표발의	김영록 (새정연)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은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출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령하게 되어 있음. ▪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함. ▪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내에 출국할 경우, 당일 출국심사 시에 퇴직금을 수령하게 함

2) 검토의견 : 입법 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본 법률안은 ①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② 외국인 노동자가 퇴직 후 14일 내에 출국할 경우, 당일 출국심사 시에 퇴직금을 수령하게 하는 내용임.
-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출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령하게 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퇴직급여지급규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가 있음.
- 현행법이 개정될 당시의 취지는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고도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불법체류자가 급증하는 것과 외국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미약함. 또한 출국한 후에는 사실상 퇴직금을 받지 못할 우려가 매우 큼. 그러므로 현행법을 유지하여 불법체류자가 급증을 막는 이익보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폐해가 더욱 크다고 판단됨. 또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평등권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고 판단됨.
- 그러므로 근로기준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를 동일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내에 출국할 경우, 당일 출국심사시에 퇴직금을 수령하게 하는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노동위원회

10. 성희롱 피해 구제 실효성을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중 일부 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 (의안번호)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1905119)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1906767)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1907117)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1903683)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1909603)
소관 상임 위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일자	1) 2013. 5. 24. 2) 2013. 9. 10. 3) 2013. 10. 2. 4) 2013. 2. 13. 5) 2014. 3. 6.
대표발의	1)한명숙(새정연), 2)노동래(새정연), 3)김광진(새정연), 4) 오제세(새정연), 5) 심상정(정의당)

주요내용	<p>1) 고객의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의 신고의무 강화 등을 통해 효율적인 대처 강화</p> <p>2) 사업주의 신고·근무장소 변경조치 의무 등을 강화하고, 모집·채용 과정의 성희롱 방지</p> <p>3)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에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변경</p> <p>4) 사업주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도록 명시함으로써 사업주로 인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p> <p>5)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등 가능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39조).</p>
------	---------------------------------------------------------------------------------------------------------------------------------------------------------------------------------------------------------------------------------------------------------------------------------------------------------------------------------------------------------------------

2) 검토의견 : 수정입법 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현재 계류 중인 성희롱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으로 약칭) 개정안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성희롱 구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을 시작으로 한 성희롱 법제화가 20년의 시행기간을 앞두고 있으나, 여전히 한계나 문제점이 남아 있음 ; 그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는, ① 고객 등 업무관련자에 의한 성희롱과 특수고용종사자 등에게 가해자는 성희롱은 제재할 수 없다는 문제, ②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직접 제재가 없다는 점, ③ 사업주에 대한 제재 방식이 벌금이 아닌 과태료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성희롱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④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만 금지하고 있어 성희롱 피해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을 때의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점, ⑤ 성희롱 방지를 위해 사용자가 강구해야 할 조치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점, ⑥ 성희롱 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실시되어 성희롱 예방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 개정안 중, 한명숙 의원 대표발의안은 고객의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의 신고의무 강화 등을 통해 효율적인 대처 강화를 시도하고,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안은 사업주의 신고·근무장소 변경조치 의무 등을 강화하고, 모집·채용 과정의 성희롱 방지하는 등 개선안을 담고 있으며, 김광진 의원 대표발의안은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에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변경하여 그 범위를 넓히고자 하고,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안은 사업주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도록 명시함으로써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어, 모두 기존 법제의 한계를 일부나마 보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음.

○ 2013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성희롱 관련 법제를 개선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구제 방법을 마련한다는 면에서 보면, 각 개정안의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고, 특히 성희롱 신고자

(피해 고지자)에 대한 작업중지권(유급휴가 부여 등)·근무장소 변경과 신속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는 조사의무 등을 구체화하는 방안들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 2014. 3. 6. 이러한 내용 중 일부를 받아들여 심상정 등 11인의 위원이 사업주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등 가능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며, 성희롱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조치를 하지 않거나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중지권’ 법안을 제출하였음(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39조).

○ 이 법안은 독일의 ‘일반적 동등대우법’을 참고한 것으로 2013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추진 법안의 취지와도 일치하는 것이고, 성희롱 피해고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일차적으로 취해져야 할 조치라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방향이라고 할 수 있음

4) 담당 검토 위원회 : 여성인권위원회 (빈곤과 여성노동팀)

11. 배우자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19098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1909814)
소관 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일자	1) 2014. 3. 20. , 2) 2014. 3. 20.
대표발의	1) 남인순(새정연), 2) 남인순(새정연)
주요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5일의 범위 내 3일의 유급휴가’에서 ‘30일의 휴가 중 20일의 유급휴가’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에서 해당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2) 고용보험기금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 검토의견 : 입법 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현행법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3일 이상 5일 이내로 규정하고 그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고 있으나 이 기간은 근로자에게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 위한 시간을 부여한

다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취지에 비하면 매우 짧고, 부성권 보호를 위해서도 보다 장기간의 휴가와 소득에 대한 일정 수준의 보전이 필요함.

○ 자녀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지 않고, 부성권을 보호하며,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출산시 배우자의 휴가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5일의 범위 내 3일의 유급휴가'에서 '30일의 휴가 중 20일의 유급휴가'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에서 해당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것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와 부성권 보장을 견인하는 동시에, 양성평등한 자녀양육 책임과 함께 이를 사회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방향으로 판단됨

4) 담당 검토 위원회 : 여성인권위원회 (빈곤과 여성노동팀)